

 신안산대학교	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운영 규정	규정 번호 4-1-36 제정 일자 2011. 9. 28. 개정 일자 2024.3.20. 책임부서/팀·계 교무처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 신안산대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는 교육과정의 운영과 다음 각 호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. <2019.11.14.개정>

1. 수업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
2. 학생 출결 관리에 관한 사항
3. 교원 휴.보강 운영에 관한 사항
4.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침 심의
5.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3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겸임하며 입학학생처장, 대외협력처장, 기획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에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한다. <2015.12.1. 개정><2023. 3. 30. 개정><2024.3.20. 개정>

제4조 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 및 보직처장은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5조 (회의)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,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6조 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.

-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0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